

[]연료 자동차 []첨가제 검사신청서 []축매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제 조 자 주 소 · 성 명	
	제 조 지 또는 생 산 지	
	시 료 명 및 종 류	
	시 험 항 목	
	제 조 법 또는 참 고 사 항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축매제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검 사 기 관 장 귀하

의뢰인(대표자) 제출서류	1. 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1부 3. 최대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첨가제 검사신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제품의 공정도 1부(축매제 검사신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수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정하는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